

# 과업지시서

- 바이오메디캠퍼스 EHP 냉난방기 유지보수 용역(삼성제품) -

2024. 05.

BMC종합행정실

## 1. 용역 개요

- 가. 용역명 : 바이오메디캠퍼스 EHP 냉난방기 유지보수 용역(삼성제품)
- 나. 위치 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32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
- 다. 용역 목적 : 교내 EHP 냉난방기의 유지보수 및 신속한 관련 민원 해소
- 라. 관리대상 : 삼성제품 천장형 냉난방기 <실내기 341대, 실외기 42조(산학협력관)>
- 마. 용역기간 : 2024.06.23. ~ 2025.06.22.(1년간)

## 2. 입찰참가자격

- 가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
- 나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
- 다.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의 청산, 합병,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, 법원의 화의, 워크아웃(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인 업체) 또는 법정관리(신청 중 포함) 사업자, 신용불량 및 이상이 있는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
- 라.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취소, 휴업, 폐업, 업무정지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, 제재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
- 마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, 제조사로부터 직접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업체

## 3. 과업 내용

### 가. 인력배치

- EHP 냉난방기 유지보수 진행 시 자체직원이 방문하여 보수 처리 필수  
[재도급(회사 자체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 직원 민원처리 등) 금지,  
냉난방기 유지보수 계약 시 유지보수 처리 직원 증빙서류 제출 필수]

### 나. 정기점검

- 1) 계약업체는 6월 중으로 전체 EHP 정밀점검(냉매배관 가스누설작업, 실내기/실외기 현황파악 등)후 점검보고서를 제출한다.
- 2) 연 2회 냉·난방 중지 기간(4월/10월)에는 실내기 필터 및 그릴 청소를 실시한다. 작업 일정은 사전 협의후 진행하여야 하며,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본사에서 충분한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.

3) 실외기 화학세척은 연 1회(4월중) 실시한다.

※ 수핀클 티엠원(SF-TM1) 동등 이상 사용(알칼리성 100% 제품)

#### 나. 고장수리

##### 1) 수리비용

- (가)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부품단가를 기준으로 5만원 이하의 품목에 해당한 제품에 대하여 무상처리 한다. (연간 용역비에 포함)
- (나)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부품단가를 기준으로 5만원 초과인 품목에 해당한 제품은 유상처리 한다.
- (다) 용역사는 매월 5일 이전까지 전월 출동 및 수리 내역을 서면보고하여야 한다.
- (라) 유상수리한 품목에 대해서는 12개월 품질 보증을 원칙으로 하며, 품질 보증 기간 내에 유상 수리 내역이 다시 발생할 경우 무상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.

##### 2) 처리 지침

- (가) A/S요청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내 현장 확인(고장원인파악) 및 48시간 이내 조치 완료(정상기능작동)를 기준처리 시간으로 한다.
- (나) 부품 수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리 처리시간이 48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, BMC종합행정실로 사전 합의하여야 하며, 이동형 냉난방기 등 대체 냉난방 조치를 취한다. (단, 전기 또는 유류비용은 학교에서 부담)
- (다) 유상처리의 경우 사전에 유상처리 내역을 승인받고 처리해야 한다.

##### 3) 처리 지연 시 조치

- (가) BMC종합행정실로부터 사전합의(승인) 없이 기준처리 시간을 24시간 이상 초과하여 지연출동하거나 지연처리한 경우, 경고 처분할 수 있다.
- (나) 1개월(해당월 1일~말일까지)에 경고처분 2회 이상이거나, 계약기간 내 경고처분 총 5회 이상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#### 다. 손해배상 책임

- 1) 계약업체의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우리대학이 산정한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.
  - 우리대학 건물의 시설, 장비 기타 재산에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

- 우리대학 구성원 또는 방문객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
  - 우리대학의 물품 훼손 또는 분실했을 경우
- 2)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, 배상금 발생 시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.

#### 5. 문의처

가. 입찰 관련 : 총무처 구매관재팀 이재우(☎ 02-2260-3090)

나. 과업 관련 : BMC행정처 BMC종합행정실 조민수(☎ 031-961-5452)